

의안번호	2213036
의 퇴 인	문정복 의원
회 답 일	2025.11.19.
추계번호	25C4992

영유아특별회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3조(세입)	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.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.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. 그 밖의 수입금	의무규정
2	제4조(세출)	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 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,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.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.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	의무규정
3	제5조 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	(제1항) 정부는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. (제2항)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「교육세법」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「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(제3항)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.	의무규정
4	제6조(차입금)	(제1항)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. (제2항)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5	부칙 제4조 (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	(제1항)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등 수입은 영유아특별회계의 수입으로 본다.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부칙 제4조 (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	(제2항) 이 법 시행 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. (제3항) 이 법 시행 전에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회계의 비용 지급 의무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승계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3조(세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4조(세출)	
3	제5조 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	
4	제6조(차입금)	
5	부칙 제4조 (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개편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것임

-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~5세 유아의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, '25년 기준 3조 1,020억원이 편성됨
 - － 동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신설되어 2019년 일몰 예정이었으나, 부칙 개정을 통해 현재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된 상태임¹⁾

- 제정안은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된 보육사업 재원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임
 -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법령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시설,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하여 관리주체가 시도교육청(유치원)과 지방자치단체(어린이집)로 상이함
 - 이에 누리과정 적용 대상인 3~5세 영유아 지원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성되는 반면, 0~2세 영유아 지원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됨
- 아울러, 영유아특별회계,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함
 - (현행)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우선 배분한 후, 나머지를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(50%)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50%)에 배분
 - (제정안) 교육세 중 금융·보험업분을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배분하고, 나머지를 영유아특별회계(60%)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40%)에 배분

[표] 제정안 시행 시 교육세 배분구조 변화

현행	제정안
○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분을 우선 배분 ○ 나머지를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(50%)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50%) 재원으로 활용	○ 교육세 중 금융·보험업분을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배분 ○ 나머지를 영유아특별회계(60%)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(40%) 재원으로 활용

자료: 「2025~2029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제정안에 따라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

- 교육부는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전제로 '26년 예산안에 9조 2,2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, 세출은 “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”, “영유아보육료 지원”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
 -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추진되던 사업이 영유아특별회계에 통합되었으며, “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”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됨
- *[참고자료]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사업 재편 현황

1) 2019년 3년 연장(의안번호 제2020698호), 2022년 3년 연장(의안번호 제2118587호), 2025년 5년(의안번호 제2211646호) 연장

-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로 ①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②신규 사업이 편성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임
 - 그러나 현시점에서 영유아 교육·보육사업의 확대·신규 편성 여부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사업 재편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2025년 예산		2026년 예산안	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		영유아특별회계(유특회계 이관)	
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	3,102,013	→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	2,838,620
일반회계		영유아특별회계(일반회계 이관)	
영유아보육료 지원	3,240,039	영유아보육료 지원	3,644,273
시간제보육 지원	28,018	시간제보육 지원	35,004
보육사업관리	5,514	보육사업관리	4,763
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	1,308	→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	1,308
보육진흥원 운영지원	22,097	보육진흥원 운영지원	22,386
보육교직원 인건비운영지원	1,961,911	보육교직원 인건비운영지원	2,138,316
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	77,292	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	68,330
		영유아특별회계(신규)	
		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	470,335

자료: 2026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